

## 제72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 통지일 : 2021년 4월 9일(금)
2. 회의일시: 2022. 4. 29(금) 11:00~12:00
3. 회의장소: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화상회의)
4. 이사정수: 8명
5. 재적이사: 8명
6. 참석이사: 이사 6명(남궁은, 김옥동, 이지영, 이미경, 조기철, 강호경)
7. 결석이사: 이사 2명(박연숙, 이규봉)
8. 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중학교 4차추경(간주처리)
- 법인, 중, 고등학교 결산안 심의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 보안 및 시정 심의

### 제3호 의안

- 교직원 인사안 심의

### 제4호 의안

- 재정기여자 모집공고에 관한 건

## 9. 의결내용

### 제1호 의안

- 중학교 4차추경(간주처리) 원안 가결
- 법인, 중, 고등학교 결산안 원안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 보안 및 시정 원안 가결

### 제3호 의안

- 중, 고 교직원 인사안 원안 가결(고등학교 장흥익 행정실장(5급) 공로연수 가결, 중학교 안유정(8급) 7급승진 가결

### 제4호 의안

- 재정기여자 모집공고 시행 의결

## 10. 회의내용

이사장 남궁은 : 이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어 제72회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호 안건 설명해주십시오.

중실장 광문옥 : 법인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은 4,564,250원이고 이월금은 30,306,241원으로 임대보증금 미환급금 3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수입 2,630,320원으로 고등학교 법인세 환급금 2,438,650원 중학교 법인세 환급금 170,850원 중학교 자동차 지방세 환급금 17,000원 예금이자 3,820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입 합계는 37,500,811원입니다. 세출은 이사회비 305,360원, 사무비 394,840원, 재산조성비 4,140,780원, 전출금 2,626,500원으로 전출금에는 고등학교 법인 전출금 2,438,650원 중학교 법인 전출금 187,85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30,000,000원으로 세출 합계는 37,467,480원입니다.

8급 안유정 : 결산 보고 전에 2021학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 추가경정이 끝난 후 목적지정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기존 학교급식 운영에 급식비 지원 항목에서 새로운 원가통계비목인 목적사업비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기존 급식비 지원에서 감액 후 목적사업비보조금에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금액 변동은 없고 세부적으로 항목상 금액만 증감되었습니다. 회의 소집이 불가하여 학교장의 예산 확정만으로 간주처리하여 확정된 예산입니다. 중학교 2021학년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전수입이 2,624,137,730원, 자체수입은 8,994,250원, 기타수입 14,478,200원으로 세입합계는 2,647,610,180원입니다. 세출은 인적자원운용에 1,535,941,480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에 234,045,910원, 기본적 교육활동에 137,634,130원, 선택적 교육활동에 2,279,560원, 교육활동 지원에 421,069,980원, 학교 일반운영에 222,463,210원으로 세출합계는 2,553,434,270원입니다.

고부장 임종경 : 고등학교 2021학년도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전수입이 3,174,160,070원, 자체수입이 4,677,114,880원, 기타수입이 317,286,800원으로 세입합계는 8,168,561,750원입니다. 세출은 인적자원운용에 3,365,053,050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에 1,911,802,300원, 기본적 교육활동에 618,398,310원, 선택적 교육활동에 523,204,060원, 교육활동 지원에 544,923,380원, 학교 일반운영에 822,118,300원, 학교 재무활동 39,158,690원으로 세출합계는 7,824,658,090원입니다.

이사장 남궁은 : 이사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사들 : 없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제 1안 법인, 중, 고 결산안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의안 정관변경 건

설명해주세요.

중실장 광문옥 : 정관변경 및 보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 제39조 임용에 관한 내용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정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시정명령과 보완필요사항은 교육청 요청에 따라 모두 시정하였습니다.

(신구대조표 아래 별첨으로 붙임)

이사장 남궁은 : 이사님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이사들 : 없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2호 의안 정관변경 건 안건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호 의안 설명해주세요.

교부장 임종경 : 고등학교 인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행정실장인 장흥익 실장님께서 2023년 1월 1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되므로 2022년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 대상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인 정관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년 경력에 퇴직 6개월이 남은 경우 공로연수 대상자가 됩니다. 법령상 80시간 이상의 공로연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7월 1일부터 퇴직전까지 세부 일정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고등학교 인사안에 대해서 반대 하시는분 있으신가요?

이사 이미경 : 그럼 연수비용이 학교 예산으로 지출되나요?

교부장 임종경 : 원래 연수비용은 학교 예산에서 지출되지만 예산을 고려하여 무료연수로 계획해 두었습니다.

이사 이미경 : 연수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교부장 임종경 : 네 그렇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다른분들 의견있으신가요?

이사들 : 없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없으시면 본안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안건 상전전에 고등학교 실장님이 직무연수를 7월 1일부터 가게 되면 직무대행 명령 해야하지 않나요?

중실장 곽문욱 : 직무대행은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차석인 임종경 부장님이 할 예정입니다.

이사장 남궁은 : 그게 의결사항 아닌가요?

중실장 곽문욱 :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이사장 남궁은 :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해주세요.

중실장 곽문욱 : 한국글로벌중학교 교직원 인사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사무직원 근속승진 대상자 제청건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주무관 안유정으로 현재 직급은 사무운영 8급입니다. 근속승진 가능일자 2022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으로는 87년 2월 25일 생이고, 최초임용직급은 기능 10급 사무원으로 최초임용일은 2009년 1월 1일입니다. 근속승진 전 직급 경력은 2015년 7월 1일부터 8급으로 있는 상태이고 승진 전 총 근무경력 13년 4개월입니다. 2009년 1월 1일 10급으로 입사 후 2011년 12월 31일 법령 개정으로 인해 10급이 전부 9급으로 진급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직종 개편으로 지방사무운영서기보로 직급명이 변경되고 2015년 5월 1일 근속승진 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상위직급인 7급 대우를 받고있는 상태이고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7급으로 승진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사장 남궁은 : 중학교 교직원 인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이미경 : 몇 년 안에 승진하게 된다는 법이 정해진게 있나요?

중실장 곽문욱 :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교육청에서 사무직원 인사지침에 의거 승진하게 됩니다.

이사 이미경 :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다른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사들 : 없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없으시면 제3호 의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주 전 정상화 추천회를 개최하였으며, 작년에 진행했던 재정기여자 모집 관련하여 1차, 2차 모두 부결된 상태이고 3차 공고를 내기전에 이사님들께 말씀드리고 공고를 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메신저 상에 답변이 없어서 지금 회의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마지막 임시이사회 업무로 3차 모집공고를 내려고 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도 자료를 보완해서 3차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 취합 결과 정상화 추진회에서는 모집공고를 한번 더 진행하자는 방향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 의결 사항에 차주에 재정기여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겠다는 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3차 재정기여자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사 이미경 : 재정기여자 모집공고를 말씀하시나요?

이사장 남궁은 : 네 그렇습니다.

이사 이미경 : 재정기여자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사장 남궁은 : 전임재단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임 재단에서 신규재단으로 변경되는 건입니다. 재정기여자가 선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청의 인가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

이사 이미경 :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잘 되지 않았나 보네요.

이사장 남궁은 : 1, 2차 진행을 했고 제안을 해주신 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서 부결되었고,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내는 상황입니다.

이사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 남궁은 : 다른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이사들 :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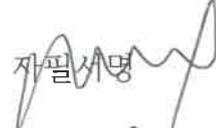
이사장 남궁은 : 네. 없으시면 차주에 모집공고를 내게 되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이사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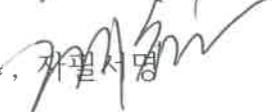
이사 이미경 :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이는 기본적 교육활동비 비율을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임시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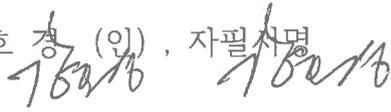
이사장 남 궁 은 (인)  자필서명 

이 사 김 옥 동 (인)  자필서명 

이 사 이 지 영 (인) , 자필서명 

이 사 조 기 철 (인) , 자필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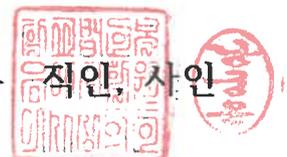
이 사 이 미 경 (인) , 자필서명 

이 사 강 호 경 (인) , 자필서명 

이 사본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2년 4월 29일

학교법인 복음아성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남 궁 은



**\*별첨**

현행(구)	개정(신)
<p>제 5 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5 조 (정관의 변경) ① 좌동 ② 정관이 법령에 위반 되었을 때 관할청은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즉각 이를 반영한다.</p>
<p>신설</p>	<p>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⑧교육경험의 범위는 사립학교법 제21조 ③항 1호부터 4호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p>
<p>제39조의4(정년)②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p>	<p>제39조의4(정년)②교원의 명예퇴직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5조에 의거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p>
<p>삭제(중복)</p>	<p>제39조의4(정년) ③제1항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다.</p>
<p>신설</p>	<p>제40조(휴직의 사유)②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따른다.</p>
<p>신설</p>	<p>제40조(휴직의 사유) 7의2.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p>
<p>제40조(휴직의 사유)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p>	<p>제40조(휴직의 사유)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p>

<p>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 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 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제40조(휴직의 사유)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p>	<p>제40조(휴직의 사유)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p>
<p>삭제</p>	<p>제40조(휴직의 사유) 13. (기타 사유)</p>
<p>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li> <li>2. 제40조 제2호의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li> <li>3. 제4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li> <li>4. 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li> <li>5. 제40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li> <li>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재직중 2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각각 3년 이내로 한다.</li> <li>7. 제4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li> <li>8. 제40조 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li> <li>9. 제40조 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li> <li>10. 제40조 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li> </ol>	<p>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del>1년을 초과치 아니하는 범위</del>로 한다.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li> <li>2.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li> <li>3. 제4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li> <li>4. 제4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li> <li>5.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li> <li>6. 제40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 40조제1항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한다.</li> <li>7. 제40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li> <li>8. 제4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li> </ol>

	<p>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p> <p>9. 제4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 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p> <p>10. 제4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가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p> <p>11. 제40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차례로 한정한다.</p>
<p><b>신설</b></p>	<p>제41조(휴직의 기간) ②제1항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교원직무연수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p>
<p>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p> <p>②제4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③제40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p>	<p>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휴직 교원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교정을 준용한다.</p>
<p>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p> <p>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p>	<p>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p>

<p>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p> <p>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p> <p>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p> <p>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⑤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명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⑦ 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⑨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p>	<p>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p> <p>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p> <p>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p> <p>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p> <p>②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교정」 및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p> <p>④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명령을 명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⑥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같은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④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⑦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p>
---	---

<p>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p> <p>⑩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⑪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del>⑩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del></p> <p>⑧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신설</p>	<p>제44조의2(면직의 사유)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li> <li>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li> <li>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幫助)하였을 때</li> <li>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li> <li>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li> <li>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li> </ol> <p>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신설</p>	<p>제55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③ 외부위원을 해촉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촉한다.</p>
<p>제58조의4(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의 사유 및 종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輕重),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li> <li>2.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li> </ol>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3.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삭제</p>
<p>신설</p>	<p>제60조(징계의결) ⑥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을 준용한다.</p>
<p>제58조의5(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p>	<p>삭제</p>

<p>기준)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2와 같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원 징계규칙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li> <li>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li> <li>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li> </ol>	
<p>제58조의6(징계의 감경기준)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li> <li>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li> </ol>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li> <li>2.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li> </ol>	<p>삭제</p>

<p>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3.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p> <p>5.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6.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p> <p>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p> <p>8.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9.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10.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11.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p> <p>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p>	
<p>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p>	<p>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p>

<p>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li> <li>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li> <li>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li> </ol>	<p>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교육공무원법」 제 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1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②감사원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p>	<p>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p>
<p>제61조의3(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 징계의 유형과 양정기준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p>	<p>삭제</p>
<p>제65조(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p>	<p>제65조(임용) ②학교에서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을 준용하여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의 실시 에 필요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를 준용한다.</p>
<p>제65조의1(준용사항) ①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단, 학교법인의 근속승진제 운영, 대우직원 선발 및 수당지급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적용한다.</p>	<p>제65조의1(준용사항) ①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p>
<p>제66조(복무)</p>	<p>제66조(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7조(보수)</p>	<p>사무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교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을</p>

	준용한다.
제68조(신분보장)	제68조(신분보장 및 정년) ①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에 따른다. ③ 사무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를 따른다.